

영화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선순환 금융생태계조성 업무협약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가치평가와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영화산업의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영화산업의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콘텐츠 가치 평가 제도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협력의 범위)

양 기관은 관련 법령 및 내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

1. (원천자료 연계) 콘진원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통계정보와 영진위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전산망 등의 정보 및 원천자료를 상호 제공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에 협력한다.
2. (선순환 생태계 조성) 콘진원과 영진위는 국내 영화산업의 제작에서부터 투용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통합적인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여 영화산업 발전에 상호 협력한다.
3. (공동사업 발굴) 영진위는 콘진원의 콘텐츠 가치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국내 영화산업의 투용자 활성화를 위해 영진위가 제작 지원한 우수 콘텐츠를 추천하고 양 기관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4. (가치평가 서비스) 콘진원은 영진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 가치평가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영진위는 신뢰성 있는 콘텐츠 가치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가 및 자문에 협력한다.

제 3 조 (성실한 상호협력)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분담업무의 수행을 위해 상호간 성실하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4 조 (세부 추진계획 수립)

양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업무협력의 범위에 대한 세부업무는 실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시 세부협약을 체결한다.

제 5 조 (비밀유지의무)

양기관은 각자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상호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권리.의무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양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한다.

제 7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석)

1.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제 8 조 (효력 및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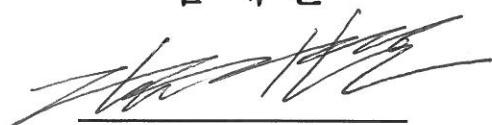
본 협약은 양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07. 15.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 세 훈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송 성 각

